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통령경호처 폐지>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69호)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05호)
- 황명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12호)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74호)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49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11

I . 제안경위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1.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01. 06.
3. 회부연월일 : 2025. 01. 07.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1. 발 의 자 : 신장식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01. 07.
3. 회부연월일 : 2025. 01. 08.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1. 발 의 자 : 황명선의원 등 26인
2. 발의연월일 : 2025. 01. 07.
3. 회부연월일 : 2025. 01. 08.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1.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02. 03.
3. 회부연월일 : 2025. 02. 04.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1. 발 의 자 : 박정현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03. 18.
3. 회부연월일 : 2025. 03.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박정희 군사정권 산물인 대통령 친위대 성격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권력남용 및 측근정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직속기관화 된 경호조직은 후진국 또는 독재정부에서 나타나는 조직형태라고 지적합니다.

주요 선진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국가정상 경호조직을 직속기구 형

태로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는 미국 비밀경찰국은 백악관 직속이 아닌, 국토안보부 소속입니다. 내각제 국가인 영국은 런던광역경찰청 특별임무국, 캐나다는 연방경찰청 경호경비부, 일본은 경찰청 황궁경찰본부(왕실)와 경시청 경호과(총리)에서 경호를 맡습니다. 경호책임자나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업무에만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에,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에서 담당하면서 그 소속으로 대통령경호국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안 제16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현재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경호처는 특정직, 일반직을 포함하여 정원이 750명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이며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 대통령경호처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과 함께 대통령 직속기구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해석이 있음. 대통령 경호조직은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49년 경무대경찰서 담당으로 출발하여 제2공화국까지 경찰이 경호업무를 맡았음. 1961년 중앙정보부 경호대가 발족되었고, 1963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속기관으로 대통령경호실을 창설한 바 있음. 군사정권 시절에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대통령 친위대로 기능하였음.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으로 불리던 대통령경호처가 최근 법이 정한 경호 업무의 범위를 넘어 군사정권 시절 대통령 보위기구와 유사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어 민주주의 시대에 맞지 않는 기구라는 지적과 함께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형편임. 한편, 해외 주요국가들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대부분 경찰조직이 담당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대통령 외에 주요 국가요인에 대한 경호는 경찰조직이 담당하고 있음.

이에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아가 국가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를 일원화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 삭제, 제34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위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현행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고,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 대통령경호처는 과거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창설되어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있음.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각 국가원수의 경호는 대부분 경찰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독일은 연방수사청 경호국, 영국은 수도경찰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에서 대통령·총리 등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조직의 장은 치안감급 또는 경무관급에 해당함.

특히, 최근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나아가 수사기관 등에서 적법한 수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행 대통령경호처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함.

이에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

속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여 담당하게 함으로써 대통령경호처의 폐해를 근절하고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가 담당하고 있음.

최근 대통령경호처가 12.3. 비상계엄 등의 내란죄 혐의로 대통령 수사를 위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면서 큰 논란을 불러온 바 있음. 이러한 문제는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두도록 규정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의 사적인 권력장치처럼 기능하기 때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대통령 경호기구는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전문성을 보유한 별도의 부처에 담당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

도록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삭제 및 제34조제6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그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주로 경호처 등 경호기구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수행해왔으나, 군사정권 시기에는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수행하였고, 박근혜정부에서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과정에서 사법기관이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음.

마찬가지로 이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이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로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사실상 친위대의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에 기존에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소관하는 대통령경호처를 정부조직법에서 삭제하고, 그 임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고자 함(안 제16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7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8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민형배의원안, 신장식의원안, 황명선의원안, 조인철의원안 및 박정현의원안은 공통적으로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신장식의원안, 황명선의원안, 조인철의원안 및 박정현의원안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사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면서,

조인철의원안 제36조제6항은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고,

박정현의원안 제34조제7항은 경찰청에 청장·차장·대통령경호본부장·국가수사본부장을 두되, 청장·차장·대통령경호본부장의 직위를 경찰공무원으로 보(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들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개정조항	주요 내용	비고
제2조제6호 신설	경호공무원을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補)할 수 있도록 규정	황명선의원안
제16조 삭제	대통령경호처 폐지	5개 개정안
제34조제5항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사무를 경찰청으로 이관	신장식·조인철·황명선·박정현의원안
제34조제6항 신설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 신설	조인철의원안
제34조제7항 신설	·경찰청에 경찰공무원으로 보(補)하도록 하는 직위 신설 - 청장·차장·대통령경호본부장 각 1명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장(1명) 직위 신설	박정현의원안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5개 개정안

【개정조문별 대비표】

현행	민형배의원안	신장식의원안 조인철의원안	황명선의원안 박정현의원안
제2조(중앙행정기 관의 설치와 조 직 등) ① ~ ⑤ (생략) ⑥ (생략) 1. ~ 5. (생 략) <u><신설></u> ⑦ ~ ⑩ (생 략)			제2조(중앙행정기 관의 설치와 조 직 등) ① ~ ⑤ (현 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u><황명선의원안></u> 6. 대통령 등의 경 호 업무 담당: <u>경호공무원</u>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16조(대통령 경 호처) ① 대통 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 여 대통령경호 처를 둔다. ② 대통령경호 처에 처장 1명 을 두되, 처장 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대통령경호 처의 조직·직 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 한다.	<u><삭제></u>	<u><삭제></u>	<u><삭제></u>

현행	민형배의원안	신장식의의원안 조인철의원안	황명선의의원안 박정현의원안
제34조(행정안전부) ① ~ ④ (생략) ⑤ <u>치안에 관한 사무를</u>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u><신설></u> ⑥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 ¹⁾ 로 정한다. ⑦·⑧ (생략)		제34조(행정안전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치안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사무를</u> ----- ----- -----. <u><조인철의원안></u> ⑥ <u>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사무를</u> 관장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속으로 대통령 경호국을 둔다. <u><신장식의의원안></u> ⑦·⑧ (현행과 같음) <u><조인철의원안></u> ⑧·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제34조(행정안전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대통령 등의 경호 및 치안에</u> ----- ----- -----. <u><박정현의원안></u> ⑦ <u>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 국가수사본부장 1명, 대통령경호본부장 1명을 두되, 청장과 차장, 대통령 경호본부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u> <u><황명선의의원안></u> ⑦·⑧ (현행과 같음) <u><박정현의원안></u> ⑧·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찰청장) ① 경찰청에 경찰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비서실(법 제14조) 및 국가안보실(법 제15조)과 별도 조직으로서 대통령 직속 기구 중 하나임.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과 관련하여 대통령경호처의 연혁을 살펴보면, 1950년 4월 경무대경찰서에서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1961년 중앙정보부 경호대가 발족하였고, 1963년 제3공화국 시절 「대통령경호실법」 제정을 통해 독립기관으로 대통령경호실이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유지되고 있음.

군사정권 시절에는 상당한 권력을 행사했다는 평가를 받아오다가 문민정부에서 첫 민간인 출신 경호실장이 임명되었고,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에서는 장·차관급 복수직제 구조에서 실제로 차관급 경호실장이 임명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실²⁾ 소속 대통령경호처로 재편되는 과정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과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되면서 경호실장직이 장관급으로 부활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경호처로 명칭이 변경되고 차관급으로 개편되는 등 다양한 변화를 겪어 왔음.

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

제15조(경찰청 차장) ① 경찰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한다.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2) 「정부조직법」 (2013. 3.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대통령실) 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을 둔다.

② 대통령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에 전담기구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경호처 변천 연혁】

연도	개정 내역	근거 규정	사유	비고
1950.4.	경무대경찰서에서 대통령 경호 임무 수행	내무부 훈령 제25호	-	
1961.	중앙정보부 경호대	중 앙 정 보 부 내훈 제2호	-	
1963.2.	대통령경호실(독립기관)을 설치	대통령경호실법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실을 설치	대통령경호 실법 제정
1998.2.	정부조직법에 대통령경호실 설치 근거 마련	정 부 조 직 법 제15조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근거를 일원화하기 위해 「정부조직 법」에 대통령경호실의 설치 근거 마련	김대중 정부 출범
2008.2.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 을 통합 -대통령실 소속기관으로 대통령경호처(차관급) 운영 ※ 대통령실 직제에 소속기관 으로 대통령경호처 운영	▪정 부 조 직 법 제14조 ▪대통령실 직제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를 위해 대통령비서실 및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로 통합	이명박 정부 출범
2013.3.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실 (장관급) 로 개편 ※대통령경호실 직제 제정	▪정 부 조 직 법 제16조 ▪대통령경호실 직제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 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 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 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 재 배치	박근혜 정부 출범
2017.7.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 으로 개편	▪정 부 조 직 법 제16조 ▪대통령경호처 직제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 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 경호처(차관급)로 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자료: 행정안전부

이처럼 대통령경호처는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정권 교체 때
마다 정치적 요인이나 배경이 영향을 미쳐 그 위상 및 존치의 필요성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이 발부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에 의해 저지되는 일련의 과정들로 인하여 대통령 경호업무를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음.³⁾

이에 개정안들은 현행법상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에 관한 사무를 경찰청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 경호조직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폐해를 방지하고, 대통령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대통령 경호조직의 월권행위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들의 심사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임.

첫째, 대통령 경호업무를 독립조직에서 전담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경찰청으로 이관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경호업무를 정치적 중립 측면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통령 경호업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적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업무를 기밀성 및 전문성과 아울러 대통령 경호업무를 경찰 이관 시 경찰 권력의 비대화

3) “‘하늘에서 내려주신 대통령’...윤비어천가에 담긴 비밀”, SBS 뉴스, 2025.2.4., “영장 저지 이어 관저 요새화 경호처 ‘尹 방탄’...‘폐지론’ 점화”, 뉴스1, 2025.1.13., “대통령 ‘사병’ 비판받는 경호처, 다른 나란 어떨까”, 세계일보, 2025.1.13. 등 다수 언론보도 참조

및 민주적 통제 부재에 대한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하여 다른 중앙 행정기관과 분리·운영되는 독립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⁴⁾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조직 관련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프랑스·이스라엘·이탈리아는 대통령 경호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조직을 두는 반면, 영국·독일·일본·캐나다 등은 경찰에서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각국은 국내외 정세 및 특성 등에 맞추어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겠음.

【대통령 경호조직 관련 한국 및 해외 주요국 운영 현황】

국가		경호 대상	경호 기관	경호책임자 직위	협조 기관	비고
독립 기구	한국	전·현직 대통령 및 배우자 등	대통령 직속 대통령경호처	차관급	경찰, 군 등	특정직
		국무총리 등	경찰청	경정/경감급		
	미국	전·현직 대통령, 부통령 및 그 가족	국토안보부 소속 비밀경호국(S.S)	차관보급	FBI, CIA, 안전국, 군, 지방경찰 등	특정직 등 7,800여명
		국무부 장관 등	국무부 경호보안국(D.S)	국장급		

4) “野 ‘경호처 폐지법’ 잇따라 발의…“현상황에선 부적절” 지적도“, 매일경제, 2025.1.9., “대통령 경호실, 경호처로 격하…”현실 절충해 일단 존치”, 뉴스1, 2017.6.5., 등 다수 언론보도 참조

국가		경호 대상	경호 기관	경호책임자 직위	협조 기관	비고
	프랑스	대통령	대통령궁 대통령경호국 (DSPR)	경무관, 준장/대령	경찰, 군인	경찰, 군인 혼합 편성
		총리 등	국가경찰청 경호국(SDLP)		경찰, 군인	
	이스라엘	총리, 주요 요인	수상 직속 국가경호국			특정 직/ 2,000명
	이탈리아	대통령	대통령 직속 대통령경호실	고위공무원	군사경찰군, 경찰, 공화국 근위연대	
		총리, 주요 요인	내무부 국가경찰청 소속 합동중앙경호국	고위경찰 공무원	경찰, 군사경찰군, 재무경찰, 교도경찰 등	2,100명
경찰청	영국	여왕, 총리, 장관급, 왕실	런던광역경찰청 특수작전국	치안감급	지방경찰	1,300여명
	독일	대통령, 총리, 장관급, 헌법재판관	연방범죄수사청 경호총국	치안감급	지방경찰	특정 직 / 550명
	일본	왕실	경찰청 황궁경찰본부	경무관: 황궁경찰본부	지방경찰	900명
		총리, 의회 고위층	경시청 경호과	총경: 경호과장		300명
	캐나다	총리, 장관, 고위법관	연방경찰청 경호작전국	경무관급	지방경찰	700명

자료: 행정안전부

셋째, 개정안들에 대하여 유관 부처의 의견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경호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대통령경호처는 다양한 테러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경호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함.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경호업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함으로써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과 밀접성이 상당한 대통령경호처의 권한 집중 및 정치적 이용 등 그동안 발생했던 폐해를 차단하려는 입법취지, 해외사례, 유관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개정안들과 유사한 입법취지를 담은 민형배·신장식·황명선·조인철·박정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⁵⁾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들의 논의 경과를 살펴볼 필요도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339

5) 【대통령경호처 폐지 관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 내용
제2207268호 (민형배의원)	2025.1.6.	- 대통령경호처 폐지 - 대통령 경호기능 경찰로 이관
제2207304호 (신장식의원)	2025.1.7.	- 대통령경호처 폐지 - 대통령 경호기능 경찰로 이관
제2207311호 (황명선의원)	2025.1.7.	- 대통령경호처 폐지 - 대통령 경호기능 경찰로 이관
제2207875호 (조인철의원)	2025.2.3.	- 대통령경호처 폐지 - 대통령 경호기능 경찰로 이관
제2209047호 (박정현의원)	2025.3.18.	- 대통령경호처 폐지 - 대통령 경호기능 경찰로 이관